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위조상품 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 이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나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 또는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지원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신고센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472-0121
  인터넷신고 : www.kipo.go.kr/ippc
-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지원팀 ☎ (053)950-3252
  인터넷신고 : www.gb.go.kr/소비자보호센터/위조상품추방(신고)

경 상 북 도
GYEONGSANGBUK-DO

아 껴 쓰 면 웃 음 경 제 마 구 쓰 면 눈 물 경 제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

▶ 의류, 가방, 신발, 시계, 귀금속, 악세사리 등 多류


샤 넬



샤 넬


루이비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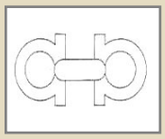


루이비똥


구 찌



구 찌


살바토르페라가모



살바토르페라가모


크리스찬디오르



크리스찬디오르



아디다스



아디다스



버버리



버버리



프라다



프라다

▶ 귀금속, 악세사리 등 장신구류



까르띠에


아가타(AGATHA)



불가리



안나수이



베르사체



티파니



에트로



펜디



폴 로



아이그너



입셍로랑



에르메스

▶ 가방, 지갑 등 가방류



비엔엑스



펜 디



안나수이



에트로



까르띠에



빈 폴



캘빈클라인



레스포삭

▶ 운동화 등 신발류



나이키



퓨 마



폴 로



에르메스

▶ 티셔츠 등 의류

폴로, 랄프로렌

캘빈클라인

리바이스

아베크롬비

닥 스

엠유스포츠

블랙&화이트

빈 폴

이동수패션

나이키

퓨 마

돌체앤가바나

이엑스알

디케이엔와이

더노스페이스

아르마니

보 스

핑

아메리칸이글

엠엘비

▶ 시계류

로렉스

까르띠에

프랭크뮬러

오메가

불가리

몽블랑

파텍필립

바세론콘스탄틴